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기준

- 동력자원부 -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이행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의해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 등 국내 5개 정유사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필요한 25일분의 운영재고량외에 별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매년 1일씩 모두 5일분의 민간비축량을 연차적으로 확보, 전체 비축량을 30일분으로 늘리도록 돼있다.

적용대상 비축물량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및 프로판 및 부탄가스등이다.

정유5사의 석유비축량이 30일로 늘어나고 또 현재 거제와 여천등에 확장 또는 신설공사중인 정부비축량도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는 97년 국내 전체 석유비축량은 모두 국제기준인 90일분으로 확대되게 된다.

동력자원부 고시 제93-15호

석유사업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3. 2. 22.

동력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저장 및 비

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 제16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석유”라 함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및 석유가스(프로판, 부탄)를 말한다.

②영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민간비축용 석유의 양”이라함은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으로서 석유비축의무자의 운영재고량이 포함되지 않는 추가로 비축하여야 할 양을 말한다.

③“운영재고량”이라 함은 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재고량을 말한다.

④“기준비축량”이라 함은 운영재고량과 민간비축용 석유량을 합한 물량을 말한다.

제3조(석유비축의무부과) ①석유비축의무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비축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매월말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보유재고량이 기준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또는 명령발동시에는 기준비축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기준비축량 미달시점 이후 매월 말기준 측정일까지의 일일평균 석유보유량이 기준비축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축의무이행기간이 가장 1개월”

②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20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년도에 보유하여야 할 운영재고량과 민간비축용석유량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고시한 물량적용기간은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석유저장시설) 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석유저장시설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저장시설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력자원부 장관은 이를 관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비축량의 산정) ①기준비축량은 영 제8조의2제2항 및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된 석유 및 석유가스저장시설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다.

②기준비축량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물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말한다.

1. 영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수출물량 및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2.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된 물량”이라함은 석유수입업자가 영 제13조제1호에 규정된 민간비축용 석유로 수입한 물량을 말한다.

③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량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한다.

④기준비축량 산정을 위한 운영재고량 및 민간비축용 석유량(이하 “운영재고량등”이라 한다)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text{ 운영재고량} = \frac{\text{[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석유의 전년도판매 또는 수입량 - 제외물량]}}{365(366) \text{ 일}} \times \text{지정된 운영재고일수}$$

$$2. \text{ 민간비축용 석유량} = \frac{\text{[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석유의 전년도판매 또는 수입량 - 제외물량]}}{365(366) \text{ 일}} \times \text{지정된 비축일수}$$

⑤영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량을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물량에 대하여는 제4항의 운영재고량등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제4항에 규정된 운영재고량등 계산식에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판매량을, 석유수입업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비축의무의 면제 및 승계) ①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 및 부산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에게 판매하고자하는 자가 석유비축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의 판매 또는 수입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등이 비축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규칙 제12조의4호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치해야 할 장부는 매일 24 : 00기

준으로 작성하며 당해년도 이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유재고량에 대한 보고) ①석유비축의무자는 규칙 제1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25호의4의 서식에 따라 당해월의 일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4제3항에 의거 정부비축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로 같음한다)

②"공사"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재고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검사)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영 제11조의4제3항에 의거 소속직원 및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비축의무자의 사업장이나 공장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서 관련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석유재고량을 검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월말 기준 이전 3개월의 일일평균보유재고량이 기준비축량에 미달하는 경우 1개월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 부과)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법 제16조의2제2항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부과액 산식 : $\text{기준비축량미달물량} \times \text{평균석유수입가격} \times \frac{\text{비축의무불이행일수}}{365} \times 60$
일간의 외환은행 내국수입유전스율
2. 제1호의 기준비축량미달물량은 기준비축량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제10조 제2항의 시정명령기한까지의 일일평균 석유보유미달물량을 말한다.
3. 제1호의 평균석유수입가격은 석유비축의무불이행기간(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축의무불이

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비축의무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비축유종에 대하여 해당월 각각의 국내평균도입단가(CIF)에 해당월 각각의 국내도입량을 곱하여 더한 금액을 석유비축의무불이행기간중 국내총도입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단,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비축유종은 원유로하고 석유가스수입업자경우는 석유가스(프로판, 부탄)로 한다.

4. 제1호의 비축의무불이행일수는 "매월말기준 이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재고량이 기준 비축량에 미달된 시점의 이전 1개월"(이하 "비축의무불이행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시정명령기한까지로 한다. 단, 비축의무불이행기간이 익년도 기준비축량 적용시점과 중복될 경우 기준비축량 적용은 비축의무불이행기산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익년도에는 새로이 규정되는 기준비축량을 별도 적용한다.
5. 제1호의 외환은행내국수입유전스율은 석유비축의무불이행기간중 말일기준을 적용한다.
6. 제1호의 평균석유수입가격의 환율적용은 석유비축의무불이행기간중 말일의 "외환은행고시 대고객전신환대율"로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부과된 과징금금액의 1/5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정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의 납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표시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정수절차는 규칙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원조치) ①영 제13조제1호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가 기준비축량중 민간비축용 석유를 수입시 수입금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증강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석유비축의무자에게 융자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